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8. 26 선고 2021가단10457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

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

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

피 고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8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9. 11. 6. 접수 제897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(단, 별지 청구원인의 ‘원고’는 ‘원고보조참가인’을 의미한다).
2. 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 정효채

별지